고유자산운용규정

제 정 2011. 9. 19 개 정(1) 2014. 5. 29 개 정(2) 2015. 4. 27 개 정(3) 2016. 9. 27 개 정(4) 2019. 2. 12 개 정(5) 2020. 9. 29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고유자산의 운용 및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한국투자공사법, 시행령, 정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운용 원칙) ①고유자산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고유자산 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고유자산을 운용하고, 위탁자산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운용조직 및 역할

- 제4조(운용조직)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한다.
 - 1. 고유자산 연간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
 - 2.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투자에 관한 사항
 - ②고유자산운용 담당부문장(이하 "담당 부문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한다.
 - 1. 고유자산 연간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운용

- 2.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지실사, 제안요청서 발송에 관한 사항 ③공사는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자산 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고유자산의 운용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고유자산 연간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투자에 관한 사항
- 4. 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
- 5. 고유자산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고유자산운용담당부서(이하 "운용담당부서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다.
- 1. 고유자산 운용계획의 수립
- 2.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제반 업무
- 3. 투자관련계약의 협상, 체결, 해지 등 제반 업무
- 4. 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의 운용
- 5. 고유자산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
- ⑤고유자산결제담당부서(이하 "결제담당부서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자금의 결제 및 회계처리
- 2. 통장 실물의 보관
- 제5조(고유자산운용위원회)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담당 부문장
 - 2. 운용담당 부서장
 - 3. 결제담당 부서장
 - 4. 투자기획 담당 부서장
 - 5.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
 - 6. 준법지원 담당 부서장
 - 7.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
 - ②위원장은 담당 부문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. 다만, 위원장 부 재시에는 운용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할 수 있다.
 - ③위원회의 간사는 운용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회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·보관한다.
 -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임직원

- 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전체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⑥위원회는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운용의 절차 및 방법

- **제6조(운용대상자산 및 운용제한)** ①고유자산의 운용은 금융투자상품 투자, 금융 기관에의 예치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험회피 목적에 한하며,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은 원칙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.
 - ④고유자산 운용에 관한 세부 절차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7조(연간운용계획서) ①운용담당부서장은 연간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운용담당부서장은 연간운용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년 운용수수료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반영하고, 운용대상, 자산의 만기구조 및 거래상대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정보교류의 차단) ①고유자산의 운용담당부서와 위탁자산의 운용담당부서간 에 "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"을 교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고유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다.
 - 1. 금융기관에의 예치
 - 2.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
 - 3.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
 - 4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의 매매
 - 5. 국내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
 - ②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- 1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
- 2.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
- 3. 위탁자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
- ③공사는 고유자산과 위탁자산 운용담당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위험관리

- 제9조(위험 관리의 원칙) ①위원회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,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고유자산 운용에 따른 운영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리스크관리 담당자는 고유자산의 운용업무를 겸무할 수 없다.
- 제10조(분산투자의무) ①운용담당 부서장은 운용자산의 만기구조, 운용대상 및 거 래상대방 등을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 런 간접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②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산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현황보고) ①운용담당부서장은 반기별로 고유자산 운용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, 위탁자산과 고유자산간 이해상충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준법 감시 담당부서에 통지한다.
 - ②준법감시 담당부서장은 고유자산 운용이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부합되어 운용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현물 등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결제담당부서장은 고유자산 운용에 따른 해당 증서, 통장, 현물 등을 확인하고 보관, 관리할 책임을 진다.
 - ②운용과 관련된 해당 증서 및 통장은 자체 금고 혹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해당 증서의 관리담당 직원과 거래인감의 관리담당 직원을 분리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